

(知)(的)(所)(有)(權)(紛)(爭)(事)(例)

著作權과 猥褻物

—더럽혀진 손의 救濟限界—

<1979年 10月 16日 美國聯邦 第5 高法 判決>

1. 原告: 抗訴人 미첼兄弟필름그룹

2. 被告: 被抗訴人 키네마아달트劇場

3. 事件概要 및 判決內容

1審인 地法에서 映畫는 猥褻映畫로 有罪判決되었을 뿐 아니라 原告는 더럽혀진 손이므로 衡平法의 原則에 따라 救濟될 수 없다 하여 原告의 請求를 棄却하였다.

그러나 高法에서는 이 地法の 判決을 破棄하였다.

1909年 制定의 著作權法은 著作物에 대해서 그 主題나 內容에 關係없이 保護를 받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著作權法은 著作權保護에 있어 그 內容에 의한 制限은 주지 않고 있다.

法廷도 또한 猥褻物에 著作權을 賦與하느냐의 與否內容의 制限은 앞으로 考慮한다 하더라도 猥褻의 標準은 時代와 場所에 따라 다르므로 이들 制限의 방패에서는 안된다고 고려한 것이다.

다음에 高法은 憲法의 著作權條項은 모든 著作權이 있는 著作物이 學問과 有用한 藝術을 增進시켜야 할 것을 必要로 하고 있는지의 與否를 檢討하였다.

이 法廷은 모든 著作權이 있는 著作物에 이러한 관가름을 하려는 것은 必要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國會는 著作權에 대하여 學問과 有用한 藝術을 增進시킨다는 힘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國會는 그 列擧된 힘의 執行으로서 必要하고 適切한 어떠한 法律도 制定할 수가 있다. 그래서 國會는 憲法上 憲法의 著作權條項에 대한 目的達成을 위하여 그 手段으로서 모든 著作物에 著作權을 보호해 줄 수가 있다.

高法은 저작물의 猥褻性은 他人의 權利侵害에 대한 抗辯이 되지 않는다고 判斷하였다. 被告가 그같은 抗辯을 主張하는 것을 法廷이 許容함은 國會에 의해 承認되지 않을 抗辯을 덧붙이게 되는 것이며 이는 저작물의 내용과는 無關하게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國會의 바램과도 矛盾된다고 봐야 한다.

抗告審은 著作權法을 猥褻의 因束手段으로 使用할 必要가 있느냐에 問題點을 찾았다. 聯邦 및 州法은 明白히 그 문제를 處理하기 위해서 있으므로 다시 猥褻性을 抗辯으로서 認容함은 通常의 著作權侵害訴訟에 처리하기 어려운 論點의 續出

을 招來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結局 高法은 例를 들어 그런 도어가 猥褻이라는 抗辯이 주장되었다 해도 더럽혀졌다는 原則이 그같은 항변의 적절한 수단은 못된다는 것이다. 더럽혀진 者가 救濟를 받지 못한다는 항변은 當事者間의 公正한 關係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原告의 惡意있는 行爲가 있을 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特許, 商標, 著作權의 訴訟에서의 被告는 原告가 社會를 害칠만큼 獨占支配의 힘을 사용할 경우에 더럽혀진 손은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항변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社會에의 侵害에 基礎를 둔 더럽혀진 손의 원칙의 항변은 萬若 原告의 獨占誤用이 獨占을 創出하는 條項에 의거한 政策을 뒤집는데 助力할 때에만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被告인 抗訴人은 社會에의 침해라고 하는 理論에 의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原告의 行動은 猥褻과 非猥褻의 저작물을 保護하는 著作權의 作用과 矛盾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